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과거사치유재단법안 검 토 보 고

〈과거사치유재단 설립 등〉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08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의의	4
2.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10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4
1. 제명, 목적	14
2. 정의	15
3. 법인격	17
4. 설립, 사무소, 정관	18
5. 사업	21
6. 국가기관 등과의 협조 등	23
7. 임원	24
8. 임원의 결격사유 등, 임원의 직무, 임직원의 겸직제한	27
9. 이사회, 직원의 임면	29
10. 운영재원, 출연금	32
11. 기부금품의 모집	34
12.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자금의 차입	35
13.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결산서의 제출	38
14. 자료의 제공요청 등	40
15. 과거사문제 등의 보고, 지도·감독 등	42
16. 비밀엄수 의무 등	4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철민의원 등 55인
2. 제 안 일 : 2025. 9. 11.
3. 회 부 일 : 2025.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법은 정부로 하여금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위령사업, 진상조사사업 지원,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과거사연구재단은 설립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사 각 사건별로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내용으로 개별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건별로 위령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있는데, 과거사에 대한 이러한 단편적인 접근은 미래지향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한계로 작용한

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10년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단일 위령시설 건립을 권고하였고, 2016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대전광역시 동구에 이를 건립하기로 하였음. 위령시설 조성지는 산내 골령골로 불리던 지역으로,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수천명이 집단 암매장된 곳임. 희생자 대부분은 제주 4·3사건이나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대전형무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로 위령시설에는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한국전쟁기 다른 민간인 피해자도 안치될 예정임. 그러나 당초 2020년 조성 예정이던 산내평화공원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4년 완공 시점이 연기된 후,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라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2026년에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산내평화공원 등 과거사 관련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안정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

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을 보호·지원하고 과거사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단은 산내평화공원 등 국가단위의 과거사 관련 위령시설 운영 사업,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과거사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교육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7조).

다.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재단의 운영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기부금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15조).

마.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30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함(안 부칙 제2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의의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40조는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¹⁾

2009년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을 대통령과 국회에 건의하였고, 2011년에는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관련 제정안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과거사연구재단은 설립되지 못하고 있음.

1) 「과거사정리법(법률 제7542호, 2005.5.31., 제정)」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기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 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 「과거사정리법」 관련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추진 경과 》

- 2009.4.10.: 화해·위령 및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방안 연구용역(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
- 2009.8.21.: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대통령·국회 건의
 -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진실규명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 ※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권고하였고, 행안부는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설립여부 및 시기 등 종합 검토 의견 제시
- 2011.6.24.: 장세환 의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임기만료에 의한 폐기
- 2022.9.27.: 「진실과 화해」 심포지엄 개최(주최:국회의원 김교흥·김철민·윤영찬 /진실화해위원회)
 - 재단설립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필요성 제기 등
- 2024.3.29.: 화해모델 및 진실화해재단 설립방안 연구용역(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4.12.4.: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재단' 설립 정부·국회 건의
 - 진실규명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국가의 지속성 있는 화해 업무를 담당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이후 2025년 8월 과거사치유재단설립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이하 산내평화공원) 본격화를 주제로 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국회사무처 법제실 주관)가 개최되어 과거사 회복의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25년 9월 산내평화공원 등의 조성·운영·관리, 진실규명 사건 조사 지원, 피해자 및 유족 지원·교류, 문화·학술 사업,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동 제정안이 발의되었음.

《 산내평화공원(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 현황 》

- **(추진배경)** 진실화해위원회가 국민화합을 위해 ‘전국단위 화해·위령시설 건립’을 정부에 권고(2010.12.)
- **(사업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12-2 일원
- **(사업기간)** 2018년 ~ 2027년
 - ※ 공사기간 2026~2027.12.(준공 예정)
- **(사업내용)** 추모관, 전시관 등 역사공원 조성
 - ※ 부지면적 102,002㎡(약 3만평)
- **(총사업비)** 589억원(전액 국비)
 - ※ 공사비 318억, 보상비 236억, 시설부대경비 35억
- **(사업추진)** 직접 수행 / 행안부(총괄), 대전 동구(설계·시공 등)
 - ※ 2018.1. 업무협약

제정안은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을 보호·지원하고 과거사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산내평화공원의 조성·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통합과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고 봄.

또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사건의 위령시설 운영, 학술·연구활동, 기념사업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을 담당할 구심점이 없고, 개별 사건에 대한 위령시설 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만이 설립되

어 있는 상황에서 산내평화공원이라는 전국단위 위령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련 재단을 설립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과거사·민주화 관련 국내 위령시설 운영 기관 현황 입법례 》

위령시설	운영처	성격	관련근거	운영특성	예산 (‘25년)	주요 재원
제주43평화공원	제주43 평화재단	공익법인 (제주도 출연기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주43사 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민간주도	80억 (국비42 +시비38)	정부, 지자체 출연
노근리평화공원	노근리 평화재단	재단법인 (충청북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노근리사 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민간주도	10억	정부 보조
거창 추모공원	거창사건 사업소	거창군 소속기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재정지원 등)	관주도	7억	정부 보조
산청·함양 추모 공원	산청군 행정교육과	산청군		관주도	6억	정부 보조
5·18기념공원	5·18기념문화 센터사업소	광주시 소속기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관주도	9억	지자체 보조
민주화기념공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특수법인 (행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관주도 (행안부)	147억	정부 보조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다만, 기 설립된 개별 과거사 재단과의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한 사업 범위 조정 등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산내평화공원 준공 시기 및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재단 설립을 위한 적절한 시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설립을 권고한 진실화해재단의 초기 예산이 70억~8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며,²⁾ 산내평화공원의 운영관련 예산 및 인력 추가 시 이보다 더 큰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³⁾

한편 재단 설립 등과 관련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들이 행안위에 계류 중인바, 제정안의 심사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2)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15명 및 감사 2명, 직원 55명 규모의 조직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재단 설립 정책 권고」, 2024.11, p.16.

3)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정안에 조직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현시점에서 재단 설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음.

《 재단 설립 등 관련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현황 》

구분	주요 내용	진행 상황
복기왕의원안 (2024.8.1.발의)	▶ 과거사연구재단의 명칭을 '진실화해재단'으로 변경 ▶ 진화위 조사기간 만료 전 '진실화해재단' 설립	법안소위 심사중
이개호의원안 (2024.12.19.발의)	▶ 국가 예산 범위에서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출연 ▶ 과거사연구재단 사업 신설(추도 사업 및 추모공원의 조성·관리, 과거사 관련 추모일 제정, 재단에 국유재산 양도)	
이해식의원안 (2025.1.15.발의)	▶ 과거사연구재단 사업 신설(과거사 추모일 지정, 추모공원 조성 및 관리, 위령탑 건립 및 사료관 설치)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포괄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2027년 준공이 예정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인 산내평화공원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련 재단을 설립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재단 설립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별 과거사 재단법인 등과의 사업 범위 조정 및 적절한 재단 설립 시기 논의를 포함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이미 과거사 관련 재단들이 개별 사건 단위로 설립·지원되고 있어 과거사 전반을 관할하는 과거사치유재단 신설 시 중복·비효율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하여 과거사 피해자 및 유족을 보호·지원하고 관련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칙 31개 조문 및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체계 및 개요】

구분	조문 내용		비 고
본문	제1조	목적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보호·지원 및 과거사 관련 문화·학술·조사 등 사업 수행 으로 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 치유, 국민통합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
	제2조	정의	▶과거사 : 「과거사정리법」§2① 사건 등 ▶진실규명결정사건 : ①진실화해위원회 사건, ②과거사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진실규명된 사건, ③과거사로서 법원에서 배보상판결된 사건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 사망, 행불, 상이,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람 ▶유족 :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조	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함
	제4조	설립	설립등기 시 성립
	제5조	사무소	대전광역시(“가칭산내평화공원” 소재지)
	제6조	정관	목적, 명칭, 지부·사업·재산 및 회계 등
	제7조	사업	①과거사 관련 위령시설 및 사료관의 조성·운영·관리, ②조사개시결정 사건 조사 지원, ③피해자 및 유족 지원·교류, ④과거사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교육사업, ⑤과거사 관련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⑥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기타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
	제8조	국가기관 등과의 협조 등	국가기관 및 과거사 관련 연구기관은 재단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9조	임원	▶이사장 1명 포함 9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 ▶이사장은 행안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장관이 임명 ▶감사는 행안부장관이 임명

구분	조문 내용		비 고
			▶이사장·이사 임기(3년), 감사 임기(2년) ※ 연임 한번 가능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피성년후견인 등, 정당의 당원,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제11조	임원의 직무		이사장(재단 대표), 상근이사(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음), 감사(재단 업무 및 회계 감사)
제1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불가
제13조	이사회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제14조	직원의 임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제15조	운영재원		출연금, 기부금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	출연금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제17조	기부금품의 모집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 모집
제18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자체는 필요 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제19조	자금의 차입		필요한 자금 차입할 수 있음(행안부장관 승인)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차입 포함)
제20조	사업연도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매년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다음 사업연도 2월말까지 행안부장관에게 제출
제2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재단은 행안부장관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음
제24조	과거사문제 등의 보고		과거사문제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행안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제25조	지도·감독 등		▶행안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함 ▶행안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해 필요한 사항 보고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 검사하게 할 수 있음 ▶행안부장관은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할 수 있음
제26조	비밀엄수의 의무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과거사치유재단 또는 유사 명칭 사용 불가

구분	조문 내용		비 고
	제28조	「민법」의 준용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적용
	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사후수뢰, 알선수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봄
	제30조	벌칙	비밀엄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1조	과태료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제2조	설립준비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7명 이내의 설립위원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 사무 처리
	제3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설립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과거사정리법」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삭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과거사’를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 등으로, ‘진실규명결정사건’을 「과거사정리법」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건, 과거사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 및 법원에서 배·보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정의함.

둘째, 과거사치유재단의 사업을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등 과거사 관련 위령시설 및 사료관의 조성·운영·관리, 진실규명사건 조사 지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교류, 희생자 유해 발굴 등으로 규정함.

셋째,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넷째, 운영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출연금, 기부금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단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함.

다섯째, 재단의 임직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하부터는 조문별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음.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제명, 목적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을 보호·지원하고 과거사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제명을 “과거사치유재단법안”으로, 재단명을 “과거사치유재단”으로 하고, 과거사 피해자 및 유족의 보호와 지원, 과거사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과거사치유재단의 설립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재단의 명칭과 관련하여 과거 발의된 제정안 및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과거사연구재단, 진실화해위원회의 재단 설립 정책권고는 진실화해재단 등 제정안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논의 경과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재단명 및 제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제명 및 재단명 관련 유사 입법례 등 》

제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1.6.24. 장세환 의원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위원회 정책 권고 (2024.12.4.)
재단명	과거사연구재단		진실화해재단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및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사”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말한다.

2. “진실규명결정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 경우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에서 진실규명결정사건으로 의결한 사건에 한정한다.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건

나. 과거사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진실규명이 결정되거나 이에 준하게 결정된 사건

다. 과거사로서 법원에서 배상 또는 보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

3.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란 진실규명결정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실규명결정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진실규명결정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

다. 진실규명결정사건으로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람

4.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정안은 “과거사”를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의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는 사건 등으로, “진실규명결정사건”을 「과거사정리법」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을 한 사건과 과거사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진실

규명 결정된 사건 및 법원에서 배·보상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정의하는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그 범위가 방대해질 수 있는 과거사 및 피해자 등의 범위를 정의규정을 통해 구체화·명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진실규명결정사건의 범위에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결정사건 외에 과거사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진실규명이 결정되거나 이에 준하게 결정된 사건, 법원에서 배상 또는 보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포함하려는 것은 다른 법률의 종류, 진실규명에 준하는 결정 여부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향후 법 적용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이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더라도 그 의결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법인격

제3조(법인격) 과거사치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정안은 과거사치유재단을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재단의 법인격과 수행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법인격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인격	제3조(법인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4. 설립, 사무소, 정관

제4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 단위 위령시설이 소재한 대전광역시로 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정안은 과거사치유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정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과거사치유재단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들을 법률로써 규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유사 입법례에서도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재단의 설립 및 정관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	제4조(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설립)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정관	제5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u>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u>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제정안 제5조가 재단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려는바, 향후 재단 사무소의 위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이 아닌 정관에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사무소 관련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무소 관련 내용을 정관 규정사항으로 하는 경우, 안 제6조의 정관 조항에 사무소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사업

제7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등 과거사 관련 위령시설 및 사료관의 조성·운영·관리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조사개시결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 지원
3.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교류
4. 과거사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교육사업
5. 과거사 관련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등과 사료관의 조성·운영·관리,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 사건에 대한 지원,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등 재단의 목적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이 전국단위 위령시설인 산내평화공원의 조성·운영·관리를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은 기존 과거사연구재단 등의

설립 논의와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과거사정리법」의 규정 및 기존의 논의 등을 참고하여 목적사업 규정의 적절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단의 목적사업 관련 제정안과 기존 논의 비교 》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1.6.24. 장세환 의원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산내평화공원) 등 과거사 관련 위령시설 △ 사료관의 조성·운영·관리	△ 추도공간 조성·위령·기념사업 △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 위령 사업 △ 사료관의 운영·관리
△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사건에 대한 조사 지원	△ 진실규명불능결정 사항에 대한 추가적 조사·연구	△ 추가 진상조사사업 지원
△ 피해자 및 유족 지원·교류	-	-
△ 문화·학술·조사·연구·교육사업	△ 과거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 진상규명 관련 문화·학술 활동 지원
△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 희생자·피해자의 유해발굴· 수습·봉환	-
△ 과거사 관련 정책대안의 개발 및 건의 등	-	-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6. 국가기관 등과의 협조 등

제8조(국가기관 등과의 협조 등) ① 국가기관 및 과거사 관련 연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이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과거사치유재단에 대한 국가기관 및 과거사 연구기관의 정보 공유, 협력사업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의 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8조).

이는 과거사치유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국가기관 및 과거사 연구기관의 협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 국가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타 기관과의 협조 등	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의 유관 연구기관과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7. 임원

- 제9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과거사와 인권 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이사장 등 재단 임원의 구성과 임명절차,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단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사의 수를 15명 이내로, 동북아역사재단이 이사의 수를 2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에 따라 구성될 재단이 담당하게 될 과거사 관련 업무의 광범위성 등을 고려할 때 이사의 수를 9명으로 하려는 것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임원 수, 임기 및 임명절차 관련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

구분	임원 수	임원 임기	임명 절차
과거사 치유재단 (제정안)	▶이사장 1명 등 이사 9명 이내 ▶감사 1명	▶(이사) 3년(1회연임) (감사) 2년(1회연임)	▶(이사장) 행안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임명 ▶(이사) 이사장 추천→행안부 장관 임면 ▶(감사) 행안부장관 임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행안부 소관)	▶이사장 1명, 상임 이사 3명 이내 등 이사 15명 ▶감사 2명	▶(이사) 3년(연임가능) (감사) 2년(연임가능)	▶(이사장) 행안부장관 임면 ▶(이사) 이사장 제청→행안부 장관 임면 ※ 임원추천위 추천 ▶(감사) 행안부장관 임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재단 (행안부 소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이내 등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이사) 2년(1회 연임) (감사) 2년(연임가능)	▶(이사장) 행안부장관 임면 ▶(이사) 이사장 제청→행안부 장관 임면 ※ 임원추천위 추천 ▶(감사) 행안부장관 임면
동북아 역사재단 (교육부 소관)	▶이사장 1명 등 이사 20명 이내 ▶감사 1명	▶(이사) 3년(1회 중임) (감사) 2년(1회 중임)	▶(이사장) 교육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임명 ▶(이사) 이사장 추천→교육부 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 후 임명 ▶(감사) 교육부장관 임명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화해재단 설립 관련 권고가 이
사회의 구성을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등 이사 15명과 감사 2명으
로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⁴⁾

4) 진실화해위원회, 앞의 보고서, p.10.

《 진실화해재단 설립 관련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안 》

구 분	내 용
진실화해재단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안)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등 이사 15명, 감사 2명 ▶(이사) 3년, 연임가능 (감사) 2년, 연임가능 ▶(조직) 1처 3실 ▶(정원) 55명 내외 ▶(예산) 70~80억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이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장의 제청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⁵⁾ 별도의 임원 또는 이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들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장이 제청하는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7조(임원) ②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8. 임원의 결격사유 등, 임원의 직무,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정안은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와 이사장, 상근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직무,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재단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출연금, 기부금 등의 투명한 집행, 업무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임원의 결격사유, 직무 및 임직원 겸직제한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제8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임원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비상근 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9. 이사회, 직원의 임면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정안은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이사회
의 설치와 구성, 이사장의 직원 임면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이사회 기능, 구성원 및 임원의 역할,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구현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이사회 구성의 명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에 이사장이 포함됨
을 명시하고,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관련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사회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①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7. (생략)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이사회의 구성 외에도 그 기능과 사무처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타 입법례를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이사회 기능 및 사무처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사회 기능	제12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이사회) ①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치유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② ~ ⑦ (생략)
사무처	제13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처) 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10. 운영재원, 출연금

제15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재단의 운영재원을 정부의 출연금과 기부금품, 차입금 등으로 명시하고,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나,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출연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출연 외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출연 목적을 재단의 운용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함으로 규정하려는바, 기금은 「국가재정법」 상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도의 기금 설치 근거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⁶⁾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출연금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출연금 등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6)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11. 기부금품의 모집

제17조(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정안은 재단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재단의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타 입법례 또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이것이 공권력에 의한 암묵적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타 입법례의 문구 등을 참고하여 이를 자발적인 기부에 한정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부금품 모집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u>자발적으로</u>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u>자발적으로</u>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12.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자금의 차입

제18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재단은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정안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재단의 재정부담을 줄여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유사 입법례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료 감면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타 법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관련 타 입법례가 존재하나, 이는 모법과 함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⁷⁾

동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항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재단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을 통해 마련하는 경우 목적사업보다 차입금 상환을 위한 수익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이자비용 증가로 재단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은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무상사용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필요가 있고, 개별법상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타 기관·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무상대부 등과 관련하여 특례 신설 기준인 ‘재단의 설립과 운영’이라는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 제정안에 출연금, 기부금품 등 타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2022년부터 국유재산 특례일몰제가 도입·시행되고 있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기간만 특례가 운영되어야 하나 제정안은 특례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3.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결산서의 제출

제2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재단의 사업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재단사업의 예·결산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재단은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⁸⁾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치유센터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 또는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결산서 제출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결산서의 제출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14.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2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재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정안은 재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단의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규정하려는 취지가 인정되며, 타 입법례도 유사하게 자료 제공요청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자료 제공요청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국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자료 제공요청 등) ① 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센터에 제출된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이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	--	--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등도 과거사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료 제공요청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0조제2항 등을 참고하여 자료 제공요청을 받은 자의 협조의무를 추가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15. 과거사문제 등의 보고, 지도·감독 등

제24조(과거사문제 등의 보고) 이사장은 과거사문제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정안은 재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과거사문제 관련 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재단의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단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되며, 타 입법례가 유사 규정들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보고체계 및 지도·감독 등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고체계	-	-	제20조(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지도·감독 등	제21조(지도·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3조(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치유센터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외교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16. 비밀엄수 의무 등

제26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과거사치유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은 재단의 임직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타 재단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민법」 상 재단법인 규정 준용,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이며, 타 입법례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참고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비밀엄수 의무,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밀엄수 의무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치유센터의 임 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22조(비밀 유지 의무) 재단의 임원 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 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 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거나 직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 의 사용금 지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 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의 준용	제27조(「민법」의 준용) 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 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 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 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 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25조(벌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0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문 의 처

02)6788-5343